우정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 - 11호

2026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우정인재개발원장

1. 시험일시: 2026. 3. 28.(토) 10:00~11:20 (80분)

※ 입실시간: 08:00~09:20 (09:20부터 응시자 안내 방송 시작)

2. 지역별 시험장소: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장 확인

모집청	지역	시험장 수
서울지방우정청	서울	4개
경인지방우정청	인천·부천	3개
	수원·성남	4개
	의정부	1개
부산지방우정청	부산	4개
충청지방우정청	대전	3개
전남지방우정청	광주	2개
경북지방우정청	대구	3개
전북지방우정청	전주	1개
강원지방우정청	원주	1개
제주지방우정청	제주	1개

가.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은 응시표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 마이페이지 > 응시현황 > 원서접수내역

나.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자는 붙임3 [2026년도 우정9급(계리) 공채 필기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대상자 응시요령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당일 08: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시험 전일에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험장 주변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 ② 여권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보훈등록증 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증)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모바일 신분증은 시험 중 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득점 불인정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통신 및 전자기기**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아.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20분 후 ~ 시험종료 10분 전)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화장실은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전·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시험 중 **화장실 사용가능 시간은 응시자가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소지품 검사, 대기시간 등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 사용 시 **시험관련 부정자료 및 물품 소지, 화장실 내 시험관련 기재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같은 시험실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사용한 응시자가 돌아온 후 다른 응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모집단위 응시자, 화장실 사용 편의지원 신청 응시자**는 시험 중 상시 사용 가능합니다(사용시간 및 횟수 제한 없음).

※ **지정시간 이외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횟수를 초과**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므로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세부사항은 '**[참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과도한 향수 사용 등)는 **자제**하여 주시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붙임2[답안지 견본] 참조

가. 득점은 OC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보기>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 **올바른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 ◑ ⊙ ◍ ◌ ⦁ ❷ ③ ●○

나. 빨간색 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를 받으면 상단에 **필적감정용 기재란, 성명, 임용 대상기관, 응시지역, 응시번호, 생년월일 등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 및 표기**하여야 합니다.

○ **(책형)** 책형은 사전에 인쇄되어 배부하니 인쇄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문제책의 책형과 동일하게 표기합니다.

○ **(자필성명)** 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필적감정용 기재란, 성명, 임용대상기관, 시험장소, 응시번호, 생년월일을 **모두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교체전 답안지는 폐기처리 됨)

라.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과 표지의 과목순서간의 일치 여부,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을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 또는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다.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표기(기재)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안내

가. 필기시험 **정답 이의제기 기간**

○ 정답가안 공개: 2026. 3. 28.(토) 17:00

○ 정답가안 이의제기 기간: 2026. 3. 28.(토) 18:00~3. 31.(화) 18:00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로그인 > 시험문제/정답 > **정답 이의제기**

나. 최종정답 공개: 2026. 4. 8.(수) 18:00

5. 가산점 등록 안내

가산점 등록 및 결과 공개 안내

가.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26. 3. 27.)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내 "원서접수→가산점등록/확인" 메뉴 화면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간: 2026. 3. 28.(토) 13:30 ~ 3. 30.(월) 21:00까지

나. 취업지원(국가보훈부) 가산점은 **"가산점 등록/확인"**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 의사상자 가산점의 경우에는 등록 기간 내에 **가산점 정보를 입력**하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직접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라. 가산점의 **허위기재 및 잘못된 입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산점 등록/확인 결과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현황 > 성적사전공개/이의제기에서 2026. 4. 20.(월) 09:00~4. 21.(화) 21:00까지 공개됩니다.

바.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지)청 보훈과**로, **의사상자 등**(의사자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2026. 3. 27.)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의사상자 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는 동일하지 않으니, 사전에 본인의 가점을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과목(4과목)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4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6. 필기시험 점수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가. 점수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기간: 2026. 4. 13.(월) 09:00~4. 14.(화) 21:00

나. 이의제기 결과 확인 기간: 2026. 4. 20.(월) 09:00~21:00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현황 > **성적사전공개/이의제기**

7.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및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 각 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6. 4. 24.(금)

나. 인터넷 원서 접수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응시자 중 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자가 발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통신사정에 따라 문자메시지 수신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응시표 출력 등 시스템 관련 문의:** 인사혁신처 콜센터 ☎ 1800-6634

▶ **시험 관련 문의: 우정인재개발원 인재채용팀** ☎ 041-560-5800

▶ **시험장소 등 학교 관련 문의: 각 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 서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 02-6967-9141)
- 경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 031-8014-3242)
- 부산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 051-559-3236)
- 충청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 042-611-1282)
- 전남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 062-600-4733)
- 경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 053-940-1565)
- 전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 063-240-3737)
- 강원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 033-749-2047)
- 제주지방우정청 사업지원과 (☎ 064-800-5963)

※ 학교(시험장)는 본 시험과 관련 없으므로 시험 장소 등은 반드시 해당 우정청으로 문의하십시오.

참고 **시험중 화장실 사용 유의사항 안내**

○ 사용 시간

① 일반 응시자	★ 10:20부터 11:10까지 1회만 사용 가능
② 장애인 모집단위 응시자 ③ 화장실 사용 편의지원 신청 응시자 ④ 시간연장 편의지원 신청 응시자	★ 시험 중 상시 사용 가능 (사용 시간 및 횟수 제한 없음)



○ 사용 절차

1. 화장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 조용히 손을 들어 요청
2.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복도로 이동
3. 화장실 사용 전후 소지품 검사
4.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험실로 이동(혼자 이동 불가)

○ 유의 사항

1. 같은 시험실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사용한 응시자가 돌아온 후 다른 응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 내에 의사표시를 한 응시자는 허용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입실이 가능합니다.
3. 소지품 검사, 대기시간 등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
4. 시험 관련 자료 소지, 화장실 내 시험 관련 내용 기재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5. 지정시간 이외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2회 이상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일반 응시자만 적용됨)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화장실 사용 이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유효 처리**